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입니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전화 (02)3707-8275-6 /전송3707-8289
 처리부서 : 도시경관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제2동2층) 담당 : 김정수

문서번호 도경 13670 - 342

시행일자 1998. 5. 13.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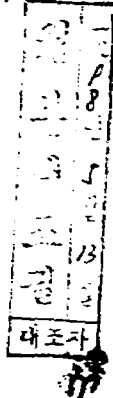


취급		시 장
보존		
국 장	전결	
과 장		법무담당관
계 장		
기안	김정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입법예고)

1. 시장직무대리지시사항 제55호('98.4.28)와 관련 입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광고물의 실명제, 광고물에 지번표시 등 주요시책 시행을 위한 법규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단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첨부 : 1.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안 1부.끝.



서울특별시

(제 2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1. 시정의 발전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많은 협조를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광고물의 실명제, 광고물에 지번표시 등 주요시책 시행을 위한 법규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추진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98. 6. 10까지 의견

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서울특별시육의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 공고안 1부.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처 : 행정자치부장관(민간협력과), 서구 01-25(광고물관리부서장),
한국광고사업협회서울시지부장, 건설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제 3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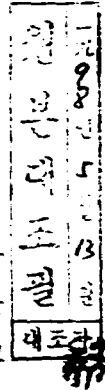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육의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공고 시보게재 의뢰

1. 시장직무대리지시사항 제55호('98.4.28)와 관련 입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 광고물의 실명제, 광고물에 지번표시 등 시행을 위한 법규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는 서울특별시육의광고물 등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에 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 1부.끝.



도시경관과장

131130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273 호

공고심사 담당자	1998년 5월 13일	제1998-273호
발령자	발령처	발령무함
하	하	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8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편익도모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에 허가사항등의 표기방법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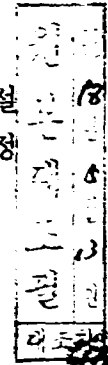
가.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기방법 규정

(1)표기 내용 : 허가(신고)번호, 주소(표시위치), 규격(광고면, 게시시설), 수허가자(신고인)·관리인의 성명·전화번호, 제작자의 성명·전화번호, 표시기간, 최초허가(신고)일자

(2)표기위치 : 광고물 우측하단에 표기가 부적합한 경우 적정위치에 표기 가능

(3)별도의 표기판을 제작 부착하는 경우의 재질 : 부착면과 유사한 재질 및 색깔

나. 영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기준



(1)설치위치

(가)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 고려,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나)다음의 장소는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가능
- 폭 15미터이하 도로변, 주요간선도로변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2)규격 : 가로 7미터 이내, 세로 6.5미터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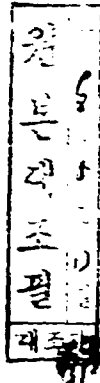
(3)재질 :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

다. 영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방법

- (1)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게시
- (2)현수막 게시 우선순위 :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목적의 행사용, 기타
- (3)게시기간 만료후 철거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은 시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 (1)규격 : 가로폭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과 일치, 세로폭은 90cm 이내
다만, 지정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함
- (2)바탕색 : 원색은 사용금지, 밝은색으로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3)지정게시대 사용기간 : 1회 15일 이내, 동일내용의 광고를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되,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4)게시방법 :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게시
게시기간 만료, 신고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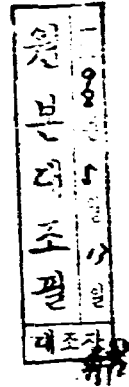
마.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중 허가·신고의 처리전에 신청인이 이를 취하하고 취하처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신청·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함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6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도시경관과장, 전화번호 : 3707-8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233 호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본문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표기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기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주소(표시위치), 규격(광고면, 게시시설), 수허가자(신고인)·관리인의 성명·전화번호, 제작자의 성명·전화번호, 표시기간, 최초허가(신고)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규격은 광고물 등의 규격·형태 등 여건에 따라 적정 변경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우측하단에 표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정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2. 별도의 표기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의 재질은 비닐·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으로서 부착면과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바탕색은 광고물의 색깔과 유사한 색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정계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영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위치를 선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를 금지하는 곳

16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6조제3항의 단서를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처리전에 신청인이 신청·신고를 취하하고 취하처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신청·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을 면제한다.

[별표 1]의 관련조항 “제13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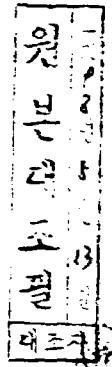
[별표 2]의 관련조항 “제15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수료 징수방법 (2)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면적에 대한 일반수수료에 전기사용 가산액(총 면적 일반수수료×전기이용 면적/총 면적)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의 관련조항 “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6]의 관련조항 “제17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